

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호 중 "표준규격의"를 "기본규격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표준규격 구성체계)"를 "(기본규격 구성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용"을 "주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으로, "표준규격 및"을 "기본규격 및"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표준규격 작성원칙)"을 "(기본규격 작성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표준규격 관리체계)"를 "(기본규격 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표준규격서"를 각각 "기본규격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사후승인)"을 "(기본규격의 사후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관장)"을 "(기본규격의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을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를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표준규격을"을 "기본규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를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나

목,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을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적용한"을 "기본규격을 적용한"으로, "표준규격을 개정"을 "기본규격을 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0년 4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표준규격번호"를 "기본규격번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u>	<u>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u>표준규격</u> 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기본규격</u>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표준규격</u> ”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구조·성능·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1. “ <u>기본규격</u> ” ----- ----- ----- ----- -----
2. “제작규격”이란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문생산 방식 품목의 주문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능을 포함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u>표준규격</u> 과 주문규격으로 구성된 규격을 말한다.	2. ----- ----- ----- ----- ----- ----- ----- <u>기본규격</u> ----- -----.

3. “표준규격 관리체계”란 표준
규격의 적정한 제정·개정·
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
제를 말한다.

제3조(표준규격 구성체계) ① 표
준규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
다.

1. 일반·구조기준 : 장비의 구
성요소, 주요사용 장치의 위치
등 소방기관에서 현장 사용상
통일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

2.·3. (생략)

② 「의료기기법」 등 관계법령
에 따라 장비의 성능기준, 시험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에
대한 표준규격 및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준규격 작성원칙) 표준규
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

3. -----
--기본규격 ----- 기본
규격의 -----
-----.

제3조(기본규격 구성체계) ① 기
본규격-----
--.

1. -----
----- 주요 사용 -----

--

2.·3. (현행과 같음)

② ----- 관계 법령-----

----- 제1항제2호 -----
-----.

③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
--- 기본규격 및 -----

-----.

제4조(기본규격 작성원칙) 기본규
격-----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표준규격 관리체계)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
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는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한
다.

1. 표준규격(안)의 작성

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나. 표준규격 개발사업을 통
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
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 3. (생략)

4. 표준규격서 관보 고시

5. 표준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② (생략)

제6조(표준규격의 사후승인) ①
소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
하고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
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
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장비기
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규격 관리체계) ① ---

---- 기본규격 -----

--.

1. 기본규격-----

가. -----
기본규격 -----

나. 기본규격 -----

2. · 3. (현행과 같음)

4. 기본규격서 -----

5. 기본규격서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규격의 사후승인) ① -

이 표준규격을 작성·시행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작성·시행한 경우 사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표준규격의 관장)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관리·감독

3. 4. (생략)

5.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관보 고시

6. 제10조에 따른 표준규격 관리대장 등록

④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

-- 기본규격-----
---.

② -----
기본규격-----

-----.

제7조(기본규격의 관장) ① ----
----- 기본규격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기본규격 -----

2. 기본규격 -----
--

3. 4. (현행과 같음)

5. ----- 기본규격-----

6. ----- 기본규격 ---

④ -----

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
1. <u>표준규격</u>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	1. <u>기본규격</u> ----- -----
가. <u>표준규격</u>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	가. <u>기본규격</u> ----- -----
나. <u>표준규격</u> 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나. <u>기본규격</u> ----- ----- -
2. 개발된 <u>표준규격</u> 의 운영	2. ---- <u>기본규격</u> -----
3. 그 밖에 <u>표준규격</u>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3. ----- <u>기본규격</u> ----- -----
제8조(<u>표준규격</u> 의 제정 등에 관한 <u>대행기관 지정</u>) (생략)	제8조(<u>기본규격</u> 의 제정 등에 관한 <u>대행기관 지정</u>) (현행과 같음)
제9조(<u>표준규격</u> 의 <u>규격번호 표기</u>) 소방장비 <u>표준규격</u> 의 <u>규격번호</u>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u>기본규격</u> 의 <u>규격번호 표기</u>) ----- <u>기본규격</u> ----- ----- --.
제10조(<u>규격서</u> 의 관리)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u>표준규격 관리대장</u> (이하 “ <u>관리대장</u> ”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u>표준규격</u> 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u>규격서</u> 의 관리) ① ----- ----- -- <u>기본규격 관리대장</u> ----- ----- <u>기본규격</u> 을 ----- ----- -----.
② 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u>표준</u>	② ----- <u>기본</u>

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①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사업대상 선정

가. (생략)

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표준규격 개발장비 선정

2. 표준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

3. 표준규격 개발사업 추진

가.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나. 표준규격의 작성

다.·라. (생략)

제12조(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규격-----

-----.

제11조(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

-- 기본규격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기본규격 -----

2. 기본규격 -----
--

3. 기본규격 -----

가. 기본규격 -----

나. 기본규격-----

다.·라.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① -----

---- 기본규격 -----

한다.

1. 표준규격의 개발 개요
2. 표준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
· 방법 및 일정
3. 표준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4. 그 밖에 표준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② (생략)

제13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
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

1. 기본규격-----
2. 기본규격 -----

3. 기본규격 -----
--
4. ----- 기본규격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 -----

----- 기본규격을 적용한 -----

--- 기본규격을 개정-----
-----.

제14조(재검토기한) -----

----- 2023년 7월 1일 ---

----- 6월 30일-----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